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119

JCCT 2019-2-15

##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

### The Modern Meaning of the Republic

신재명\*

SHIN JAEMYUNG\*

**요약**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만으로 구별하여 소극적·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이해·강조·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주요어** : 공화국, 공화주의, 신자유주의, 평등.

**Abstract** Traditionally, the definition of a republic in the constitutional sciences has remained passive, identifying whether or not a king exists. However, this is not an accurate understanding.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Republic at this point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easing the side effects of neo-liberalism.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o establish a concrete picture of what a republic is in reinterpreting its meaning. Therefore,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to clarify it by presenting requirements for the Republic.

**Key words** : Republics, Republicanism, Neo-liberalism, Equality.

#### 1. 서론

헌법법학계에서는 왕의 존재 여부로만 공화국을 구별하는 것이 주류적인 태도이다.<sup>[1]</sup> 그러나 이는 공화국

의 변천되어 온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는 것인 동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헌법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사고이다. 따라서 이는 공화국을 인식하는 타당한 태도가 아니며, 공화국개념에 대한 소극적·형식적 이해에

\*정회원, 법학박사, 경남도립거창대 보건의료행정과  
접수일: 2018년 9월 23일, 수정완료일: 201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5일

Received: September 23, 2018 / Revised: October 28, 2018  
Accepted: December 15, 2018

\*Corresponding Author: sjmmarine@nate.com  
Dept.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Univ, Korea

서 탈피하여 동 개념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은 헌법학의 당면한 과제이다.<sup>[2]</sup>

공화국의 개념에 관하여 고전 학자들의 생각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루소는 주권자의 일반의지에 의하여 도출되는 모든 정부가 공화정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군주정도 공화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칸트 역시 역설적으로 군주국이 공화정을 현실화시키는데 더 적합한 체제라고까지 말하였다.<sup>[3]</sup> 일반적인 이해는 이와 달리 공화정은 무조건적으로 민주정과 부합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해의 간극은 고전 학자들이 공화국개념의 확립에 있어 왕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초점을 둔 사실을, 오늘날의 학자들이 몰이해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는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국이라고 형식적으로 이해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왕조가 소멸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다시 왕조뿐만 아니라 입헌군주제조차 들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나라를 강조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보더라도 특별히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저 형식적인 수사정도로 취급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위 군사 정권들은 줄기차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자신들의 치부를 차양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왔다. 형식적인 이해와 달리 공화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가치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용해 온 것은 아닐까?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는 일반적인 정의로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 혹은 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는 공화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가져야 할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확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모든 형태의 경제체제를 포괄할 수 있고,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부터 무자비한 전체주의국가까지 안을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화국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인 결함 내지 완충형태를 항상 모색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공화주의적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날이 엄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가치를 목살시킬 수 있는 이념이고, 이 때 국가의 존재 가치는 그것에 조력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공화국의 가장 큰 의미는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중요시하는 공화주의를 부활시킴으로써 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충하는 것에 있다.<sup>[4]</sup>

## II. 본론

### 1. 공화국개념 확립의 필요성

공화국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화국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국이라는 용어는 가장 불확실한 개념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헌법상 여러 개념들은 그것을 낳게 한 각 시대적·공간적 배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인데, 공화국이라는 개념도 동일하게 2,00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오면서 변천해오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현재의 공화국의 상이 가져야 할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 2. 공화국의 요건

#### (1) 공공물로서의 국가

고대사회는 진정한 공화주의적 사고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사회가 붕괴된 이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가를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로서 인식하였다.

국가가 사유물이 아니라는 공공물이라는 관념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전제정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근대 입헌주의국가가 점차 생성되면서부터이다. 즉, 불과 약 300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회복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도 형식적으로 보아도 약 70년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정권이 몰락한 후부터이니 약 3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물이라는 사고

로 전환되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우리는 막대한 피를 흘려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라는 망상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 얼마 전 불행히도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심판이 있었다.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공물인 공화국을 사유물처럼 사용하여 그 이념을 훼손한 것이 아닐까? 공화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고로 그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지도자와 주체 세력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그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존을 지지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주체적인 국민을 상정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권력적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복종은 노예의 삶과 동일하다. 우리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타파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화국을 건설한 것이다. 국가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공화국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대의기관은 국가를 소유한 자내지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국민에게 반대급부를 받고 일하는 공무원 내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고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 자신과 그 주변부에서 빈번하게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판타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입신양명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반공화국적인 사고가 그 원인인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무한한 권력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선민의식이 결합되어 마침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부를 이용하여 투기를 일삼고 경제적 약자를 더욱 착취하는 행태, 그것이 우리 공화국 정신을 갉아먹는 주범인 것이다.<sup>[6]</sup>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공화국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지위를 감히 담당한다는 것을 전근대적인 시대의 출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진정한 공화국에서는 공직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달콤한 출세가 아니라 굉장하

성가신 일로 설정해두었다. 맡은 임무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대우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공화국에서는 공직 예정자 및 공직자 그리고 그 주변부가 감히 국가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공화국의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거칠게 말하자면,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에게는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즉, 공직은 오로지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명예로서 수행하도록 설정해둔 것이다.<sup>[7]</sup> 이것이 공화국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설정으로 말미암아 누가 공직을 담당할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공화국의 국민의 경우 자신에게 공직이 돌아올 경우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 공익적 영역의 의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고,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명제로 뇌리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북유럽국가 국회의원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개입을 개방하는 국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

공화국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 방법으로 대의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의제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대의제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막아서는 경우 그것은 공화국으로 볼 수 없다. 공화국의 국민은 어느 시기, 어느 사안이든지 국가적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 때 참여의 가능성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한해서이고, 그 중요한 사항의 범위 역시 국민이 결정한다. 특히, 국민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영역은 입법기능이다. 장자크 루소에 의하면 법은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입법은 국민의 고유한 업무이고, 국민은 이러한 입법기능을 획득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가 준수하여야 할 법률을 제시하게 되며, 이는 곧 국민이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부

여하고 있다. 국민이 공화국에 있어 주권자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권한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 국민이 입법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고작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거나 정당에 입법을 제안하는 것 외에 방법이 전무하다. 이러한 방식은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주체적인 지위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노예적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는 조선 시대의 신문고를 통해서 전제 군주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이 가능해지면 국민은 사실상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수도 있다.

요컨대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개입가능성은 입법권의 권력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국민이 입법권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행사할 수 따라서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실질적 주권자에 가깝다고 판단될수록 그 나라는 공화국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요건의 충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서 국민의 직접 입법권은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진정한 공화국의 국민이 되도록 촉진시켜 줄 것이다. 나아가 선순환적인 기제되어 공화국의 자격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3)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하는 국가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기업은 국가와 정치인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즉,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과거 다른 어떠한 경제 체제보다 경제 원리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적 논리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도 때로는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경제 논리만을 최우선시한다면 위조달러 제조, 마약의 수출, 반

인륜적인 살상 무기 수출 등 세계 경제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반인륜적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들은 손쉽게 거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하므로 장려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해준다면 이 업체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국가는 편안하게 많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공화국은 기업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이다. 즉,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에 대한 국가의 방관은 곧 공화국 국민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본연의 의무이다.

경제 원리가 극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는 완전한 돈의 노예가 곧 모든 국민의 노예화를 불러 올 것이고, 그 시작은 경제에 종속되어버린 개인이 정치적 관심을 스스로 거세하는 것이며, 중국적으로 국민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관계를 국가가 조정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국가는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냉혹함에 적응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sup>9)</sup> 무기력한 시민은 암울한 경제적 상황의 최소한의 탈피 외에 집중할 여력을 잃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 국민들을 옥조이게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공화국의 길을 점차 멀어지게 할 것이고, 중국에는 공화국이라는 단어자체를 화석화시킬 버릴 것이다.

시장동향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이 통제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동향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통제될 것인가? 이 질문에 선택된 답에 따라 국가가 전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공화국의 향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극소수의 국민만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극단적 자유주의국가의 향로로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

공화국은 경제의 논리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시되는 국가이다. 이는 경제의 영역이 개인 삶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적 혹은 개인적 삶의 일정 영역만을 차지하는 체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는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관계조차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골적인 사리사욕과 무정한 ‘현금 계산’ 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남겨두지 않았고, 종교적 열광, 기사적 열중, 속물적 감상주의 등의 거룩한 황홀경을 이기적 타산이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빠뜨려버렸다.[10]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을 타파하고자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사회주의에서는 전체 군주와 다를 바가 없는 독재 권력이 출현하였고, 이 독재 권력이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양식을 강압적·일률적으로 강요하였다. 이렇게 강요된 단결과 양식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종래의 사회주의로 무장한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폐망하거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빈곤해진 것이다.

이에 반해 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공화국의 주체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톨레랑스(tolerance), 배려, 친절이 공화국 국민의 키워드이다. 즉, 돈 보다 공동체 의식으로 단결된 사회, 바로 그것이 공화국인 것이다.

#### (4)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현대 국가의 헌법은 크게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이 두 지향점은 수레의 바퀴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방향으로 균형 있게 구동되어야 수레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의 이 균형은 자주 깨어지려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평등은 자유에 비해 그러한 속성이 더 농후하다. 최초에는 평등하게 출발한 사회도 소소한 틈들을 계속 인정하다보면 '깨어진 유리창 이론'처럼 후에는 개인의 능력으로 넘어서기 힘든 차별이 정착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모습을 보자. 삼성과 현대는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초대형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을 보면 그 기업들이 산업영역의 곳곳에 독점적 지위를 선점함으로써 후생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고, 이러한 행위를 정치권이 조력하는 행태가 수 없이 존재한다. 현재의 대기업들은 불확실한 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기존의 영세 상인들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결국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많은 경제

영역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잃고 종속되어 간다. 그것은 심각하게 양극화된 우리나라 소득분배수준에 쉽게 확인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 지위가 극도로 지배된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도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속된 사회는 중국에는 붕괴된다는 것이 역사적인 상식이다. 우리는 조선의 역사에서 공정한 분배구조를 가지지 못했던 조선이 어떻게 처절하게 폐망했는지 매우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그 사회 제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상식적 결말이 도출된다. 그것은 바로 내부 세력에 의한 혁명에 따라 새로운 국가의 성립되거나 외부 세력에 의한 피정복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평등한 국가나 사회의 종착점은 소멸뿐이다.

공화국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평등이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은 권력자에 대한 통제와 연관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이다. 공화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비의존성과 동등성을 중대한 공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국민들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부자나 권력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11] 더 나아가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공정한 법에 의한 개인적 선택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본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는 “행정관조차 두려워하는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도시라면 자유로운 도시라고 불릴 수 없다.”[12]라고 표현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극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착한 사회는 공화국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가치, 즉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주권자로서의 덕성과 시민적 우애심과 같은 것들이 받아하기 힘든 토양이기 때문에 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평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수치가 높다는 것, 특히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수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지니계수 0.381, OECE 회원국 중 28위 2015 기준)은[13] 우리 자신은 물론 공화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14]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화국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 (5) 자의적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공화국은 국가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도 피지배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그런데 공화주의에서 명명하는 자유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르다.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란 단순한 간섭의 부재를 말하는데 반하여 공화국에서의 자유란 ‘자의적 지배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sup>115</sup> 달리 말하자면, 자유롭다는 것과 지배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에게 온화하다고 알려진 황희 정승과 같은 주인을 만난 노비라도 자유로울 수는 있다. 그러나 노비가 매우 자유로운 종속상태라도 주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노비의 자유의 정도가 변하고 심지어 생사여탈마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인이 존재하는 한 지배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sup>116</sup> 위 예와 같은 종속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화주의에서의 자유, 즉 ‘자의적인 지배권력의 부재’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양자의 의미가 다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 즉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노동자에게는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자유롭게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언뜻 보면 지배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만약에 그가 해고를 당한다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그 노동자는 곧바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해고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비정상적 근무도 감내하여야 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생존을 담보로 회사에 지배당하고 있는 노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는 반드시 강제성으로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영향력이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배의 유형을 일일이 법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화국의 국민은 자신과 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하고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를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피지배여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경계함으로써 지배가 발생하는 환경을 소멸시키는 노력과 지배

를 거부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또한 지배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사회 전 방위에서 시도되어지므로, 공적 범주뿐만 아니라 사적 범주에서의 지배까지 배제될 수 있어야 진짜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화국은 모든 지배가 소멸된 국가를 뜻한다.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에서 지배가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종속관계가 없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적 기초를 조성해야한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목적적 규정으로서 공화국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규정으로서 경제민주화를 돕으로써 체계적으로 공화국이념의 관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III. 결 론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며, 오늘날 전체정이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헌법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암울했던 IMF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신자유주의의 침습을 경험했다. 신자유주의는 점차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 가던 우리 국민들의 종래 공동체질서를 모조리 파괴시켜버렸다. 따라서 오늘날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모색해보고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여 처참하게 붕괴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사회주의국가 또는 군사정권에서처럼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이해·강조·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실질적인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 References

- [1] Han Soo Woong, Constitutional Science, Bobmunsa, 2012, p. 99~101; Lee Joon Il, A Course in Constitutional Studies, Hongmoonsa, 2013, p. 90~91; Kwon Young Sul,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iscourse of the Constitution, Bobmunsa, 2007, p.301~303; Jung Jong Sub. Constitutional Science Principle, Parkyoungsa, p.222; Han Tae Ye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ystem, Dong-A law review No.3 [1986], p. 42~43.
- [2] Kim, Seon-Taek,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Studies Vol.15 No.3 [2009], p. 45.
- [3] Kant, I., Zum ewigen Frieden(1975), in: Kleinere Schiften zur Geschichtsphilosophie, Ethik, Politik, hrsgg v. K. Vorländer, 1964, S.115ff.(128ff); Kim, Seon-Taek,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Studies Vol.15 No.3 [2009], p.56.
- [4] Cho, Sung-Ra, Who's Afraid of Liberalism?, History and Discourse Vol.54 [2009], p.273.
- [5] Lee Hun-hwan, Social Science Research Vol.4 [1991], p.347.
- [6] Kim Dong Hoon, Korean Constitution and Republicanism,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p. 131.
- [7] Cho Seung-Rae, Republic and Republicanism : A Historiographical Review, History Paper Vol.198 [2008], p. 243.
- [8] Rousseau Jean-Jacques, Kim Joong Hyun, The Social Contract, Penguin classics [2010].
- [9] Kwak Jun-Hyeok, Why and Which Republicanism?,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1 No.1 [2008], p.144.
- [10] Karl Marx, Kwon Hyuk, Communist Manifesto, Doduls, 2010, p.24.
- [11] Kim Dong Hoon, Korean Constitution and Republicanism,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p. 129~130.
- [12] Niccolò Machiavelli, Kang Jung In, Ahn Sun Jae, The Discourses, Hangilsa, 2003, p. 169.
- [13]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Panel):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2011~2017 / OECD, Gini coefficient.
- [14] Yun Jeong Lee, Influence of Self-Rat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Health Behavior in Urba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 81~82.
- [15] Na In Ho, Republicanism as a criticism of neo-liberalism, HISTORY & CULTURE Vol. 20, p. 243.
- [16] Cho Seung-Rae, Republic and Republicanism : A Historiographical Review, History Paper Vol.198 [2008], p. 245, 248.